

## **품질관리서 미제출에 따른 사용승인 관련 회신**

건축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1항에 따라 복합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이하“관련업자”라 한다)는 품질관리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관련업자의 폐업 등으로 품질관리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승인 가능 여부

-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품질관리서는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가 적법하게 제작되어 현장에 시공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이해관계자가 아닌 다른 관계자의 서명이 되었거나 서명이 되지 않은 것은 품질관리서를 도입한 취지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 품질관리서의 작성의 의무가 있는 이해관계자가 품질관리서를 작성 또는 제출하지 않았다면, 허가권자가 건축현장에 시공된 건축자재가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서의 세부인정내용대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조업자가 판매한 건축자재와 건축현장에 시공된 건축자재의 로트번호가 일치함을 확인한다면, 동일한 자재가 제작·유통·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울러, 「건축법」 제10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